

# 2026학년도 대입 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선정 규정(안)

2025학년도 군산여자고등학교 3학년부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2026학년도 대입 지역균형선발 전형에 해당하는 학교장 추천전형, 고교추천전형 등(이하 학교장추천전형)의 지원 대상자 선발에 있어 각 대학의 지원 자격과 추천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을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무)

- ① 2026학년도 대입 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3학년부장, 위원은 3학년 담임교사로 하며, 위원장 유고 시 간사가 회의를 진행한다.
-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④ 추천위원회는 학교장추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전형 유형(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등) 및 전형 방법(서류, 내신성적, 수능최저학력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선정하여 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로 추천한다. 단, 대학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한다.
- ⑤ 위원은 친인척 학생에 대한 추천 심사에서 제척된다.

## 제3조 (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절차)

- ① 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의 추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학교장추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및 전형방법, 지원 자격, 본교의 대입 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선정 규정 및 절차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공지한다.
  - 나. 해당 대학별 지원자격 요건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졸업생 포함)이 수시 전형 시작일 3일 전까지 대입 학교장추천전형 지원 신청서(양식1)를 3학년부에 제출하면 추천위원회의 심사 대상자가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 사유에 한하여 학교장추천전형 지원 희망자의 수가 대학에서 제시한 추천 인원 수 이하일 경우에는 ‘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경우 수시 전형 시작일까지 학교장추천전형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졸업생은 지원 신청서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1부를 제출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대학의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수능 성적표(가장 최근의 수능 성적 또는 당해연도 6월 모의평가 성적 중 최소 1개 이상)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된 자료가 있는 경우 학교장추천전형 추천대상자 심사 시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부여한다.
  - 다. 학교장추천전형 지원 희망자의 수가 대학에서 제시한 추천 인원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서 대학별 선발 기준을 고려한 자체 평가<sup>1)</sup>에 의한 추천 서열 명부(최대 2배수)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천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 경우 지원자는 총 2개의 대학까지 학교

1) 제4조에서 규정한 평가 방법을 따른다.

장추천전형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sup>2)</sup>의 경우는 예외로 추  
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라. 학교장추천전형 지원 희망자의 수가 대학에서 제시한 추천 인원 수 이하일 경우에는 추천  
위원회에서 학교장 추천 자격의 적격 여부만 판단하여 추천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 경우 지  
원자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학의 개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마. 학교 폭력과 관련된 징계 처분의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자는 정상을 감안하여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최종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각 대학별 학교장추천전형 추천 대상자를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심  
의한다.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대학별 학교장추천전형 추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추천한다.

다. 나 항에 의해 학교장추천전형 추천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었으나 추천 전형 지원을 포기하  
고자 하는 지원자는 학교장추천전형 지원 포기원(양식3)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학교장추  
천전형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라.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 추천 결과를 보고한다.

마. 대입 일정상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장추천전형 추천 대상자 심의가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학교장추천전형 추천 대상자를 최종 확정된 뒤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는  
다.

**제4조 (학교장추천전형 지원자의 평가 방법)**

① 대학별 학교장추천전형 지원자의 수가 해당 대학의 추천 인원 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학  
교 지원자 전원에 대해 ‘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평가표’(양식2)를 작성하고 평가표의 점수 총합을  
기준으로 추천 서열 명부를 작성한다.

② 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평가표의 총점 및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순	항 목	배점	대학 전형 방법에 따른 반영 여부				비 고
			교과100		교과+기타(서류 등)		
1	교과 영역	140	○		○		성적산출 프로그램에 의한 대학별 환산 점수
2	비교과 영역	50	×		○		학교생활기록부
3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40	반영	미반영	반영	미반영	재학생: 6월 모의평가 성적 졸업생: 최근 수능성적 또는 당해연도 6월 모의평가 성적
			○	×	○	×	
총 점			180	140	230	190	

(※ 재학생 중 6월 모의평가를 미응시한 경우 당해연도 3,5,7월 모의고사 각 영역별 평균등급(반올림)을 활용한다.)

③ 평가표의 각 항목의 세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교과 영역(내신성적) [140점 만점]**

각 대학의 교과 영역 점수 산출 방법에 의거하여 산출된 점수로 지원자의 석차를 부여하고 1  
위에게 140점 만점을 부여하고 이후 등수부터는 3점씩 차등 배점한다. (성적산출 프로그램 활용)

2)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KAIST, GIST, DGIST, UNIST, 한국종합예술대학, 한국전통문화  
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산업대학 등의 대학으로 수시 지원횟수(6회)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예시)

내신 성적 대학별 환산 점수	석차	배점	내신 성적 대학별 환산 점수	석차	배점
999.24 / 1000	1	140	995.28 / 1000	4	131
998.52 / 1000	2	137	991.12 / 1000	5	128
998.52 / 1000	2	137	:		

(※ 위의 예시에서 2위는 동점자 2명이므로 3위(배점134점)는 없으며 이후 석차는 4위부터 부여함.)

**나. 비교과 영역(학교생활기록부) [50점 만점]**

**1) 출결 [25점]**

기 간	근태 상황	반영 점수
재학생: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졸업생: 1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	미인정결석 1일 이내	25
	미인정결석 2일 이내	23
	미인정결석 3일 이내	21
	미인정결석 4일 이내	19
	미인정결석 5일 이내	17
	미인정결석 5일 초과	15

**2) 학교 활동 [15점]**

기 간	학교활동	기간별 부여 점수
재학생, 졸업생 모두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1) 전교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1년 임기 충족 시 3점
	2) 학생자치회 부장 학급 실장, 부실장 동아리 기장(창체)	학기당 1점

(※ 2)에서 동일 학기에 다수의 학교 활동이 중복되는 경우 상위 점수 2개 활동까지 인정하며, 학교활동 합산 점수가 15점을 초과할 경우 학교활동 영역 점수는 15점으로 함.)

**3) 봉사활동 [10점]**

기 간	교내 봉사활동 시간	반영 점수
재학생, 졸업생 모두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14시간 이상	10
	12시간 이상 14시간 미만	9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8
	10시간 미만	7

**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40점 만점]**

평가 대상	기 준	반영 점수
재학생: 6월 모의평가 성적 (미응시한 경우 3월, 5월, 7월 모의고사 영역별 평균(반올림) 등급)	대학별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40
	대학별 수능최저학력기준 0.5등급 초과	38
	대학별 수능최저학력기준 1등급 초과	36
	대학별 수능최저학력기준 1.5등급 초과	34
졸업생: 최근 수능성적 또는 당해연도 6월 모의평가 성적	대학별 수능최저학력기준 2등급 이상 초과	30
	한국사 기준등급이 있는 경우 기준등급 미충족시 1등급마다 -2점씩 감점	

④ 평가표의 합산 점수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교장추천전형 지원자의 추천 서열 명부를 작성하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가. 재학생과 졸업생이 동점인 경우 재학생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나. 재학생 간의 동점, 또는 졸업생 간의 동점인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로 배점이 높은 학생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교과 활동 점수 >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 출결사항 점수 > 학교 활동 점수 > 봉사활동 점수
---

### 제5조 (기타)

- ① 추천 우선순위에 있는 대상자가 지원을 포기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학생에게 인계한다.
- ② 기타 사항은 추천위원회에서 협의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③ 본 규정은 당해연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